미래를 준비하는,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

제159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▢ **일시·장소:** ’26. 11. 4.(수) 14:00 ~ 15:3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▢ **참 석 자**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(온라인 출석)

○ 해 양 경 찰 청 : 장비기술국장, 안건 국·과장, 위원회담당관 등 9명

▢ **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5건(원안의결 2, 수정의결 3), 보고 1건**

【심의·의결 5건】

<table>
<tr><th>연번</th><th>형식</th><th>안 건 명</th><th>주 요 내 용</th><th>심의
결과</th><th>부서</th></tr>
<tr><td>1</td><td>부령</td><td>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※ 재상정 안건</td><td>• 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기준 개선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현 행</th><th>개정(안)</th></tr><tr><td rowspan="2">안전장비</td><td>▎탑승정원이 참가자 인원의 100% 이상인 비상구조선</td><td>▎참가자 15명마다 1대 이상의 무동력 구조선을, 참가자 100명마다 동력 구조선을 추가로 배치</td></tr><tr><td>▎참가자 110% 구명조끼 등</td><td>▎무동력 구조선마다 2개 이상, 동력구조선마다 5개 이상의 부력유지기구 등 배치</td></tr><tr><td>안전요원</td><td>▎기본 1명 + 참가자 10명당 1명 이상 배치</td><td>▎기본 1명(총괄) + 비상구조선 마다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</td></tr></table>수정사항 비상구조선 배치기준(기본 1척+참가자 수에 비례하여 추가)에 혼선이 없도록 수정</td><td>수정
의결</td><td rowspan="2">해양
안전</td></tr>
<tr><td>2</td><td>훈령</td><td>「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」 폐지안</td><td>• 해상 구급업무 전반의 기준을 「해양경찰 구급업무에 관한 지침」으로 통합·제정함에 따라 기존 지침 폐지</td><td>원안
의결</td></tr>
<tr><td>3</td><td>훈령</td><td>「해양경찰 구급업무에 관한 지침」 제정안</td><td>• 해상 구급업무 전반의 기준을 통합·체계화
(주요내용) △ 구급대원 지정·자격·임무 △ 응급환자 이송 절차 △ 구급교육(연1회 이상) △ 장비·의약품 관리 △ 지도점검 등
수정사항 ① 인용 법령의 종류와 상위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약칭 정비
② 띄어쓰기 등 기타 자구 수정</td><td>수정
의결</td><td>수색
구조</td></tr>
</table>

연번	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
일괄상정	4	훈령	「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• **'과학기술자문위원회'**의 자문 **기능**을 **'연구개발사업 총괄심의위원회'로 이관**하여 **연구개발 관련 위원회 일원화** **(주요내용)** △ 자문 기능 추가 △ 수당 지급비밀엄수해촉 근거 마련 등 수정사항 오탈자 등 자구 수정	수정의결	장비기획
	5	예규	「해양경찰청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칙」 폐지안	• '과학기술자문위원회'의 **자문 기능**을 **'연구개발사업 총괄심의위원회'로 이관**함에 따라 **본 규칙 폐지**	원안의결	

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**11월 주요 업무보고**	기획재정

첨부1 **수정의결 사항**

▢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4호가목1호(비상구조선) 무동력비상구조선 1척 이상과 동력비상구조선 1척 이상을 각각 배치하고, 참가자 15명당 무동력비상구조선 1척, 100명당 동력비상구조선 1척을 갖추어야 한다.	**제4호가목1호(비상구조선)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추가로 갖추어야 한다.**
수정사유 비상구조선은 기본 1척에 참가자 수 비례기준에 따른 척수를 더하는 방식이므로 문구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'추가로 갖추어야 한다'로 수정	

▢ 「해양경찰 구급업무에 관한 지침」 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조(정의) 1. ~ 4. (생 략) 5. "구급대원"이란 구급장비 및 함정 등에 설치된 해양구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(이하 "수상구조법"이라 한다.)**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6. ~ 10. (생 략)	**제2조(정의)** 1. ~ 4. (생 략) 5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**(이하 "수상구조법 시행령"이라 한다)** ---------- ----------. 6. ~ 10. (생 략)
제6조(구급대원의 자격기준) 구급대원은 **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	**제6조(구급대원의 자격기준)** ---------- **수상구조법 시행령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 ① ~ ② (생 략) ③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대원은 응급의료법 제41조 및 제42조	**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** ① ~ ② (생 략) ③ ---------- ----------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하고, 업무 범위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**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**) 별표 14와 같다. ④ 제6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대원은 **시행규칙** 별표 14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응급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출동 사항과 응급처치 및 의료지도 내용을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. 다만,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. ⑤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(**이하 "응급의료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**) ----------. ④ ---------- ------ **응급의료법 시행규칙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⑤ (생 략)
제8조(함정등의 선정 및 운용) ① ~ ⑥ (생 략) ⑦ 그 밖의 이송 시 필요한 사항은 **수상구조법** 및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.	**제8조(함정등의 선정 및 운용)** ① ~ ⑥ (생 략) ⑦ ---------- **수상구조법 시행령** ---------- ----------.
수정사유 인용 법령의 종류와 상위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각각 "수상구조법 시행령", "응급의료법 시행규칙"으로 약칭을 정비하고, 관련 조문의 인용 표현도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8조(함정등의 선정 및 운용) ⑥ **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**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(死傷)에 대하여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2, 제63조에 따른다.	**제8조(함정등의 선정 및 운용)** ⑥ **구급대원이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수정사유 「응급의료법」 제5조의2와 제63조에 따른 면책이 '생명이 위급한 환자'에게 응급의료 등을 제공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삭제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 략) 7. "해양구급시스템"이란 함정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기 위한 **장비로서,**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병원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적절한 의료 지도 및 응급처치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과 응급환자 분류 및 이송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해상응급환자이송정보시스템을 말한다.	**제2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6. (생 략) 7. ---------- **시스템으로서**, ----------.-
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**구급대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응급환 자 이송 업무에 관해 적용한다.**	**제3조(적용범위)** ---------- **구급대원의 구급 활동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**
제6조(구급대원의 자격기준) 구급대원은 **「수상에서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해양경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.**	**제6조(구급대원의 자격기준)** ----------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**
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 ②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에게 가능한 업무범위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, 함정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**인계한다.**	**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** ②---------- **인계해야한다.**
수정사유 자구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 ① 구급대원은 해양구급시스템, 구급장비 등을 **점검·관리**해야 한다.	**제7조(구급대원의 임무)** ① ---------- **점검·관리·운용**----------.
수정사유 구급대원의 임무에 해양구급시스템 및 구급장비 운용을 추가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5조(건강관리대책)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제2호의 자격으로 채용된 구급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**특수 건강검진을** 실시하며, **특수 건강검진**을 받은 구급대원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중복으로 **시행할 수 없다.** ② ~ ③ (생 략) ④ **특수 건강검진** 항목은 별표 2와 같다	**제5조(건강관리대책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특수건강검진을**---------- **특수건강검진**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받을 수 없다.** ② ~ ③ (생 략) ④ **특수건강검진**----------.
수정사유 띄어쓰기 수정	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<별지 3호 서식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사용에 관한 설명 · 동의서>	
1. 목적 본 시스템은 해상 및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병원과 시스템을 원격으로 연결하여 실시간 의료지도를 받아 적절한 **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**	**1. 목적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**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**
2. 내용 시스템을 통해 해양원격응급의료지원병원으로부터 영상·음성으로 의료 지도를 받아 **응급처치를 실시하며**, 이를 위해 환자상태 파악을 **위해** 환자의 영상·음성 및 생체신호(혈압,맥박,산소포화도,체온 등) **데이터를** 의료기관에 전송 됩니다. 또한, 응급처치 **과정의** 수집된 정보(사진, 영상 등) 및 개인정보(인적사항, 병력 등)는 응급처치 및 이송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·제공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.	**2. 내용** ---------- ---------- ----**응급처치가 실시되며,** ---------- ---------- **위한** ---------- ---------- ---**데이터가**----------. ----------**과정에서**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수정사유 자구 수정	

▢ 「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

상 정 안	수 정 의 결
제31조(기술료의 납부) ①~② (생 략)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(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말한다. 이하 **"정부납부기술료"**라 한다)에 대한 납부 고지서를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(이하 **"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"**이라 한다)에 송부해야 한다.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**제31조(기술료의 납부)** ①~② (생 략) ③ ---------- "정부납부기술료"라 ---------- "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"이라 한다) ----------
수정사유 오탈자(따옴표) 수정	

첨부2 주요 의견 (정기회의)

▢ 11월 주요 업무보고

○ 동절기는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**인명피해 비중이 높은 이유**?

– 동절기는 **기상악화와 낮은 수온의 영향**으로 사고발생 빈도는 하절기 대비 낮지만, **사망·실종의 비율이 높음**.

○ 연말에 **예산 및 법안 등 심사가 마무리**되면 **주요 변경사항과 결과**를 요약하여 **위원회에 보고**해주기 바람.

▢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○ **구조선을 참가자에 근접 배치**해서 위험 상황 발생 시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**구조 체계는 바람직**해 보임. 다만, 안전요원의 수가 구조선의 수에 맞춰 증가하도록 설계된 배치기준 관련해서는 별개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보임. **육상 안전관리에도 공백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**하고 **주최측을 지도**해줄 것을 당부드림.

○ 최근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 연안체험활동도 향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, 현재의 마라톤 대회의 교통통제와 같이 **연안체험활동으로 일반인이 불편을 겪거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**가 있는지?

–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**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은 없었음**.

○ **구조선 배치 기준을 실질적인 구조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**해보임. 지난번 재상정 의결 시 안전요원의 수와 소형 구조선의 척수는 **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**했었는데 **반영되지 않은 이유**는 무엇인지?

-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. 다만, 이번 개정으로 **소규모 행사**에 대해서는 보다 **안전관리가 강화**되었고, **중·대규모 행사**에서도 규제 완화가 아닌 **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가 가능**해진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함.

- 안전요원의 수와 관련해서는 물론 많이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**합리적인 기준이 어떤 것일지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**임.

- 지난 심의의 단계적 접근 의견에 비해 재상정안의 변화가 충분한지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, **부서의 판단을 신뢰하여 시행해보자는 의견을 제시**함.

- 최초 상정 시 안전요원 기준이 20명당 1명으로 되어있었으나, **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**하여 15명당 1명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보다 **안전관리를 강화한 내용으로 재상정**하게 되었음.

- **우선 시행**을 해보고 **추후에 부작용 가능성**이 나타나면 **신속하게 기준을 변경하는 등 조치**를 할 것을 당부드림.

▢ 「**해양경찰 구급업무에 관한 지침**」 **제정안**

○ 장시간 해상 이송에서는 단순 의료 지도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 **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충분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체계**가 갖추어져 있는지?

– 함정의 응급구조사가 시스템을 통해 **응급실 전문의와 연결**하고, **심박수·산소포화도 등을 확인**하며 **가능한 응급처치를 시행**하고 있음. 육상과 같은 수준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,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**협약에 따라 의료지도는 무료로 제공**됨.

○ 제정안 제8조가 **면책 대상 상황**을 '생명이 위급한 환자'로 한정하였으나, **「응급의료법」 제63조 취지에 맞춰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검토 필요**. 다만, 구급대원에 포함되는 '**교육받은 일반 해양경찰관**'의 **교육·능력 수준을 확인할 필요**가 있어보임.

– **교육은 약 2주간 진행**되며, 교육을 이수한 해양경찰관을 구급대원으로 운용하고 있음. 다만, 이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자가 아니며 **수행 가능한 처치와 전문성에 차이가 있음**.

– 응급구조사와 교육받은 경찰관의 응급처치 범위가 다르므로 **면책 대상 상황을 일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**해보임.

– 일반 경찰관의 교육시간·처치능력 등을 고려하면 **현재 원안의 인용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**됨.

– **‘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’라는 제한 문구를 삭제**하고, 구급대원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**「응급의료법」 제5조의2와 제6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리하는 안으로 의결**하겠음.

▢ 기타 의견

○ 명백한 오탈자나 문장부호의 수정까지 답변자료와 구두보고에 포함하는 것은 회의 진행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판단됨. 향후에는 관련 사항은 별도 답변절차 없이 서면자료로만 제시하고, 판단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보고하길 바람.